

1. 개정 이유

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“소방본부장 또는”을 “소방본부장, 부분부장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의2(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) ① 시·도 <u>소방본부장</u>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. 다만,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	제19조의2(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) ① ----- <u>소방본부장, 부분부장</u> 및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